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11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4년 2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화)

2. 제안사유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 정비(조례 안 제1~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 안 제3~4조)
- 다. 타 기관(학교, 체육회)의 협조 및 지원사항 신설(조례 안 제9조~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스포츠클럽법」
-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2024. 1. 18.~ 2. 7.(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 2022. 6. 16.)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근거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근거 법률인 「생활체육진흥법¹⁾」에 따라 우리구도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해왔음.

1) 「생활체육진흥법」상 스포츠클럽 관련 규정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재정 지원의 의존성, 법·제도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2021년 6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음.
- 따라서,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고 구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2개 구²⁾가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 **설**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 **흥**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는 바, 이는 상위법령 제정취지에 따른 것³⁾으로 보여짐.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에서 뜻하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안 제4조제1항은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하여 ▶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 인건비·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⁴⁾ ▶ 그 밖에 구

2)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3) 「스포츠클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함.

- 안 제4조제2항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5)에 따라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지정스포츠클럽에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입찰 원칙⁶⁾에도 불구하고, 지정스포츠클럽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7)에 따라 모든 스포츠클럽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

「스포츠클럽법」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5)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7)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
- 그리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마포구체육회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학교 및 마포구체육회의 협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와 같이 살펴본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 소재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표 1] 마포구 스포츠클럽 현황

(2024. 2. 기준)

클럽명	성격	소재지	운영종목	현황	
				회원수	인력
사단법인 마포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비영리 체육법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길 31-11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바둑, 배구, 라인댄스	총 회원 : 516명 유소년회원: 336명	총인원 10명
대한스포츠 배구클럽 (등록스포츠클럽)	비영리 체육법인	마포구 만리재옛길 30, 다동 107호	배구	25명	총인원 6명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

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